



제418회국회(정기회)
제7차 기획재정위원회

통계법 일부개정법률안

검 토 보 고

〈통계 오류에 대한 주기적 점검 의무 및 위반시 시정요구〉

■ 민홍철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2204192호)

2024. 11.

기 획 재 정 위 원 회

수석전문위원 송주아

목 차

I . 제안경위	1
II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1
III . 검토의견	2
1. 통계 오류에 대한 주기적 점검 의무 신설 (안 제27조제6항)	2
2. 통계 오류의 주기적 점검 및 오류 수정·공표 의무 위반 시 통계청장의 시정요구권 등 신설 (안 제36조제1항)	6

I. 제안경위

가. 발 의 자 : 민홍철의원 등 17인

나. 발 의 일 : 2024. 9. 23.

다. 회 부 일 : 2024. 9. 24.

II.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통계작성기관의 장으로 하요금 통계 내용에 오류가 있음을 발견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수정하고 이를 공표하여야 한다는 규정을 두고 있음.

그러나 중앙행정기관이 작성한 통계에 오류가 있었음에도 이를 수정하고 공표하는 일이 지체되는 경우가 발생하여 관련 규정을 강화할 필요성이 제기됨.

이에 통계작성기관으로 하요금 주기적으로 오류를 점검하도록 하고, 오류의 주기적 점검을 시행하지 않거나, 발견한 오류를 지체 없이 수정하지 않거나, 이를 공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통계청장이 해당 기관의 장에게 시정 요구 또는 조치계획 수립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27조제6항 및 제36조제1항제7호의2).

II. 검토의견

1. 통계 오류에 대한 주기적 점검 의무 신설 (안 제27조제6항)

현 행	개 정 안
○ 통계작성기관의 장은 공표한 통계의 내용에 <u>오류가</u> 있음을 발견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수정하고 이를 공표하여야 함	○ 통계작성기관의 장은 공표한 통계의 내용에 <u>오류가 있는지 주기적으로 점검하여야 하고, 오류가</u> 있음을 발견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수정하고 이를 공표하여야 함 ○ 시행일: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

현행법은 통계작성기관의 장은 공표한 통계의 오류를 발견한 경우 지체 없이 수정하고 이를 공표하도록 하고 있으나, 오류 점검의 실시여부 대해서는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않음.

개정안은 통계작성기관의 장이 공표한 통계의 오류를 주기적으로 점검하도록 의무화함으로써 통계 내용에 대한 사후관리를 강화하려는 취지로 보임.

통계작성기관이 공표하는 통계는 정부 정책의 수립·평가 또는 경제·사회현상의 연구·분석에 이용되는 정보¹⁾로, 그 내용에 오류가 있는 경우 이를 근거로 수립한 정부 정책 등의 실효성과 국민 신뢰도를 저하

1) 「통계법」

제3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3. “통계작성기관”이란 중앙행정기관·지방자치단체 및 제15조에 따라 지정을 받은 통계작성 지정기관을 말한다.

제15조(통계작성지정기관) ① 통계청장은 통계의 작성·보급 및 이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정부정책의 수립·평가 또는 경제·사회현상의 연구·분석 등에 이용되는 수량적 정보를 작성하고 있거나 작성하고자 하는 기관등의 신청이 있는 경우 해당 기관등을 통계작성지정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지정요건은 통계작성 조직 및 예산, 통계작성계획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시킬 수 있고 정치·경제·사회·문화 등 각 분야에서의 의사결정을 왜곡시킬 우려가 있음.

개정안은 통계 오류의 주기적 점검을 의무화하여 통계 오류를 조기에 발견하여 수정하도록 함으로써 통계의 정확도를 제고하고, 잘못된 통계가 지속적으로 활용될 가능성을 방지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 타당한 것으로 보임. 또한, 주기적인 점검을 통해 통계작성과정에 대한 투명성을 높이고, 통계 내용에 대한 국민의 신뢰도를 제고하는 긍정적인 측면이 있을 것으로 보임.

다만, 개정안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

첫째, 개정안은 통계 오류를 주기적으로 점검하도록 하고 있으나, 점검 주기 및 방법 등에 관하여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않음.

이에 따라 각 통계작성기관별로 오류 점검 방식이 상이하게 운영될 가능성이 있으므로 점검 주기 및 방법 등을 대통령령 등 하위법령으로 정하도록 하여 제도 운영이 통일적이고 체계적으로 이루어지도록 하는 방안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

둘째, 통계작성기관이 공표한 모든 통계에 대해서 주기적으로 점검하게 하는 것은 과도한 행정비용이 발생하여 비효율적이라는 의견이 제기될 수 있음.

현재 통계작성기관이 작성·공표하는 국가승인통계는 총 1,343종임. 통계 내용의 오류를 실효적으로 점검하기 위해서는 기획·자료수집·분석·공표자료작성 등 통계작성 전(全) 과정에 대한 재검토가 필요하므로 모든 국가승인통계에 대해서 주기적 점검 의무를 두게 되면 통계작성기관의 행정부담이 가중될 뿐 아니라, 통계작성비용의 증가를 초래할 수 있다는 지적이 있을 수 있음.

셋째, 개정안은 시행일을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로 하고 있는데, 각 통계작성기관의 점검 계획 수립 및 관련 지침 마련, 법 개정사항에 대한 교육 등에 필요한 기간을 고려하여 시행일이 적정한지 여부에 대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보임.

참고로 「통계법」상 통계 오류의 수정·공표 의무가 신설(2024. 3. 26.)된 이후 통계작성기관이 통계청에 제출한 통계 오류 수정·공표 현황은 총 3건임.

[통계작성기관의 통계 오류 수정·공표 결과 통계청 제출현황]

통계명 (통계작성기관)	공표일	수정일	오류 수정사항
주택건설실적통계 (국토교통부)	2023	2024. 4. 30	시스템 변경시 코드누락으로 인한 인허가, 착공, 준공 과소집계 수정
축산환경조사 (농림축산식품부)	2024. 5. 21	2024. 10. 2	간행물 통계 오류 수정
지역소득 (통계청)	2024. 9. 5	2024. 9. 20	인구기준 변경(시도별 장래인구추계, '24. 5. 공표) 에 따른 수정

출처: 통계청, 2024. 10.

한편, 기획재정부와 통계청은 공표한 모든 통계에 대하여 통계의 내용을 주기적으로 점검하게 하는 것은 기대효과 대비 과도한 행정비용이 발생할 우려가 있으며, 미국·일본·캐나다 등 주요 선진국 통계법령에서도 공표한 통계의 오류 점검 의무를 규정한 입법례를 찾기 어렵다는 점을 고려하여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임.

또한, 통계청은 국가통계는 자료수집·처리·분석 등의 통계작성 단계마다 오차 및 타당성 등을 점검하여 발견된 오류의 수정을 완료한 후 공표하고 있으며, 공표 이후의 통계 오류 등에 대한 체계적인 점검은 「통계법」 제9조부터 제12조에서 정한 정기·수시·자체 통계품질진단 등²⁾을 통해 수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입장임.

2) 「통계법」

제9조(정기통계품질진단) ① 통계청장은 정부의 각종 정책 수립·평가 또는 다른 통계의 작성 등에 널리 활용되는 통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요 통계의 작성 및 보급의 제반과정에 대하여 10년의 범위 안에서 주기적으로 통계품질진단(이하 “정기통계품질진단”이라 한다)을 실시하여야 한다. (이하 생략)

제10조(수시통계품질진단) ① 통계청장은 제11조에 따른 자체통계품질진단을 실시하지 아니하거나 품질이 낮아졌다고 믿을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통계에 대하여는 수시로 통계품질진단(이하 “수시통계품질진단”이라 한다)을 실시할 수 있다. (이하 생략)

제11조(자체통계품질진단) ① 통계작성기관의 장은 소관 통계에 관하여 매년 통계품질진단(이하 “자체통계품질진단”이라 한다)을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작성주기가 1년을 초과하는 통계의 경우에는 그 통계를 작성하는 해 또는 그 다음 해에 실시할 수 있다. (이하 생략)

제12조(통계의 작성·보급에 관한 사무에 대한 개선요구 등) ① 통계청장은 정기통계품질진단·수시통계품질진단 또는 자체통계품질진단 결과의 반영 또는 유사하거나 중복된 통계의 조정 등 통계의 신뢰성 및 통계제도 운용의 효율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통계작성기관의 장에게 통계 작성의 중지·변경이나 그 밖에 통계의 작성·보급에 관한 사무의 개선을 요구할 수 있다.

② 통계작성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요구를 받은 때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구를 따라야 한다.

2. 통계 오류의 주기적 점검 및 오류 수정·공표 의무 위반 시 통계청장의 시정요구권 등 신설(안 제36조제1항)

현 행	개 정 안
○ 위법행위의 시정 요구 등 <신 설>	○ 위법행위의 시정 요구 등 - 통계 오류의 주기적 점검 의무 및 발견된 오류의 수정·공표 의무 미이행 시 통계청장의 시정 요구 또는 재발방지 조치계획 수립 요구 및 관계 공무원 등에 대한 주의·징계처분 요구

현행법은 통계작성기관의 장은 공표한 통계의 오류를 발견한 경우 지체 없이 수정·공표하도록 하고 있으나, 이러한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을 경우 조치사항에 대해서는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않음.

개정안은 통계 오류에 대한 주기적 점검 의무를 신설하면서, 점검 의무를 미이행하거나 발견한 오류를 지체 없이 수정·공표하지 아니한 경우 통계청장이 통계작성기관의 장에 대하여 시정요구나 재발방지 조치계획 수립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또한, 이 경우 현행법 제36조제2항³⁾에 따라 통계작성기관이 중앙행정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인 경우에는 그 위반행위에 책임이 있는 통계종

3) 「통계법」

제36조(위법행위의 시정 요구 등) ① 통계청장은 통계작성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를 한 경우에는 해당 기관의 장에게 그 위반행위의 시정을 요구하거나 재발 방지를 위한 조치계획을 수립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1. ~ 12. (생략)

② 통계청장은 제1항에 따른 요구를 하는 경우로서 요구의 상대방이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인 경우에는 그 위반행위에 관하여 책임이 있는 통계종사자 또는 관계 공무원에 대한 주의 또는 징계 처분을 함께 요구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요구를 받은 통계작성기관의 장은 지체 없이 그 위반행위의 시정, 재발 방지 조치계획의 수립 또는 그 위반행위에 관하여 책임이 있는 통계종사자 또는 관계 공무원에 대한 주의 또는 징계 처분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고 그 결과를 통계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사자 또는 관계 공무원에 대한 주의·징계 처분 요구를 함께 할 수 있게 되며, 현행법 제41조⁴⁾에 따라 통계청은 통계작성기관이 시정요구 또는 재발방지 조치계획 수립 요구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게 됨.

개정안은 통계작성기관의 의무 위반에 대한 통계청장의 시정요구 등을 통해 관리·감독을 강화함으로써 통계 오류의 주기적 점검 및 오류 수정·공표 의무에 대한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한 취지로 타당한 것으로 보임.

또한, 시정요구 등의 미이행 시 과태료를 부과함으로써 시정요구 등 이행에 대한 강제력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며, 이미 통계작성기관의 공표 의무 등 위반에 대하여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는 바 과태료 수준도 적정한 것으로 보임.

다만, 통계 오류의 주기적 점검 의무 신설 여부에 따라 통계청장의 시정요구권 등의 구체적인 내용이 결정되어야 할 것으로 보임.

4) 「통계법」

제41조(과태료) ③ 통계작성지정기관이 제36조제1항에 따른 시정요구 또는 재발 방지 조치계획 수립 요구(같은 항 제9호의 위반행위로 인한 것은 제외한다)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 신·구조문 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27조(통계의 공표) ① ~ ⑤ (생략)	제27조(통계의 공표) ① ~ ⑤ (현행과 같음)
⑥ 통계작성기관의 장은 공표한 통계의 <u>내용에 오류가</u> 있음을 발견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수정하고 이를 공표하여야 한다.	⑥ ----- ---- <u>내용에 오류가 있는지 주기적으로 점검하여야 하고, 오류가</u> ----- -----.
⑦ (생략)	⑦ (현행과 같음)
제36조(위법행위의 시정 요구 등) ① 통계청장은 통계작성기관이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를 한 경우에는 해당 기관의 장에게 그 위반행위의 시정을 요구하거나 재발 방지를 위한 조치계획을 수립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제36조(위법행위의 시정 요구 등) ① ----- ----- ----- ----- ----- -----.
1. ~ 7. (생략)	1. ~ 7. (현행과 같음)
<신설>	7의2. 제27조제6항을 위반하여 <u>오류가 있는지 주기적으로 점검하지 아니하거나 오류를 지체 없이 수정하지 아니하거나 이를 공표하지 아니한 경우</u>
8. ~ 12. (생략)	8. ~ 12. (현행과 같음)
②·③ (생략)	②·③ (현행과 같음)

문의처

02)6788-5151